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

의 안	5 9 9
변 호	

발의년월일 : 1999. 12. 8

발 의 자 : 광근영 의원 외 12명

1. 주 문

- 국도 33호선 4차선 확 · 포장공사인 고성~자은구간, 자은~상리구간 총 16.47km의 지하통로 4곳, 신호등 20곳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히 상리구간 10Km 구간에는 지하통로박스가 1곳 뿐이므로 교통사고위험 및 지역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이의 해소차원에서 지하통로 박스로 변경설치 건의문 채택

2. 제안이유

- 관할 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 공사 단행
- 구간내 신호등이 많아 차량통행 및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빈발 우려
- 농경지 농기계 운행차질 및 영농경작 애로
- 지하 통로박스 설치로 문제점 근본적 해소대책 강구

3. 참 고

- 1999년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의 1999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됨.

건의문(안)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는 국도 33호선의 4차선 확포장 공사인 고성~자은간, 자은~상리간 총 16.47km의 구간중에 시공되는 지하통로 4곳과 신호등 20곳을 설치계획으로, 특히 상리구간 10Km 구간에는 지하통로 박스가 1곳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종전 인근 마산에서 통영간 국도 14호선의 4차선 확포장공사 시에 지하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수많은 신호등 설치로 인해 교통장애는 물론 수많은 교통사고의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공사 시공전 관할 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의 협의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사 및 설계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상기 국도 33호선의 본 공사는 설계서상 나타난 수많은 건널목과 신호등 설치 계획은 관할 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소통상의 장애와 4차선상의 농민들의 영농경작애로 및 농경지 진입상 문제와 농기계 조작 등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며, 또한 교통사고 등의 인명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의 근원적 해결책을 위하여 지하통로 박스설치 검토를 위한 조사팀(발주처, 관할 자치 단체, 경찰관서, 군의회, 지역주민대표 등) 구성을 건의 하며, 조사팀 설치운영으로

사고의 사전예방대책 및 민원 해소와 제반문제를 해결키 위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고성군의회 전 의원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합니다.

1. 국토 33호선상의 4차선 확포장 공사의 기존 설계를 재검토하고 관할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보완 시공할 것
1. 현재 공사 및 시공중인 구간에 대하여 관할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되지 않은 공사시공은 즉각 중단할 것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 발주관서의 행정편의적 예산 절감운운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교통신호대 등 설치의 도로 확포장 공사는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하통로박스로 변경시공할 것

1999년 12월 일

경남 고성군의회 의원일동